

정정신고(보고)

2022년 08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집합투자규약
미래에셋TIGER미국테크TOP10INDXX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4.04

3. 정정사유 :

- 1) 투자대상자산 추가
- 2) 법 개정사항 반영

4. 정정사항 :

- 1) 투자대상자산 추가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생략> 6. <신설>	① <생략> 6.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 (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의해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의 파생결합증권
제16조 (투자 대상자산 취득 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따른다. 1.~5. <생략> 6.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 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 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 이하 가 되도록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따른다. 1.~5. <생략> 6.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 및 파 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을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 이하로 한다

2) 법 개정사항 반영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생략> 2.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 사법 또는<생략> 3.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 사법 또는<생략>	① <생략> 2. <삭제> 3. <삭제>